

# 자매결연 협약서

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(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)과 (사)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리드릭(이하 “을” 이라 한다)은 상호 협력적 자매결연을 통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교류와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의 목적은 양 기관이 사회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갖고 상호연대를 통한 상호교류 및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데 있다.

## 제2조(업무협약 내용)

- “을” 은 “갑” 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.
- “갑” 은 “을” 의 1인 후원계좌 갖기에 협조한다.
- “갑” 은 “을” 의 사회적 기업 제품구매에 협조한다.
- “갑” 과 “을” 은 상호협력 활동시 홍보에 적극 임한다.
- 기타 세부협의사항은 양측의 합의로 추진한다.

제3조(신의성실) “갑” 과 “을” 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호협력  
하며, 협약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한다.

제4조(세부사항 협의)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 
“갑” 과 “을” 이 협의하여 정한다.

제5조(협약서 보관) 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 
“갑” 과 “을” 이 공동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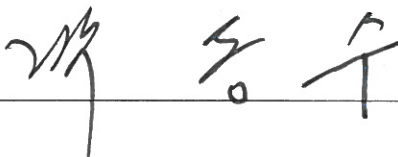
제6조(시행기간) 본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, “갑” 과 “을” 이  
쌍방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2011년 10월 24일



대한지적공사  
지적연구원

원 장 박 동 수

  
\_\_\_\_\_



(사)장애우권익문제  
연구소 리드릭

원 장 김 정 열

  
\_\_\_\_\_